

純祖-純宗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研究

이 은 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교수

A Study on Pobeckchuck in the History from the Sunjo to the Sunjong Dynasty

Eun-Kyung Le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2008. 1. 29 투고)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fining the meaning of Pobeckchuck in the historical view-point, which appeared in the History of Joseon Dynasty, regarding the periods from the ruling period of Sunjo to that of Sunjong as the latter part of history. Pobeckchuck used in King Sejong was red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ment in the Kyeonggukdadejeon(code), in which time one Pobeckchuck was 46.80cm long. It is known that Juchuck, Hwangjongchuck, Youngjochuck, Joraegichuck etc. which had been used in the ruling period of Sejong Dynasty, were used till the period of Youngjo.

Also, the document shows that in the 12th ruling period of Sunjo, Pobeckchuck was used for measurement, and in the 20th ruling period of Sunjo, newly-made ruler was only used for the measurement of fields, but no more details about how long it was. But according to the document complied at that time, one Pobeckchuck was 46.80cm long, which fact reveals that the same measurement was used as in the ruling period of Sunjo.

When all the measurement law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3rd year of Junghee, the 6th year of Kwangmu were abolished, Pobeckchuck was solely banned from its use, which fact offers a glimpse of how confusing at that period was.

The comparison and examination among many documents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show the differences within about 4cm that one Pobeckchuck ranged from 44.80cm to 48.80cm long. But no other document on measurement appeared in the History of Joseon Dynasty, except for the 46.80cm. Thus, the 46.80cm corrected in the ruling period of Sunjo proves that one chuck in Pobeckchuck adopted by the dynasty was used as the measurement of length till the ruling period of Sunjong.

Key words: Pobeckchuck(포백척), veritable records of Joseon(조선왕조실록), annals of Sunjo(순조실록), annals of Sunjong(순종실록)

I. 緒論

1. 問題의 提起

布帛尺의 研究는 우리의 服飾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服飾에 관한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遺物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용되었던 尺과 그 1尺의 길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현재의 치수로 계산하여 그 실제 치수를 가늠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몇 백년 전에 지은 옷을 이해하고, 그가 지난 計劃과 比例를 파악하자면 당시 사용하였을 尺의 1尺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입장에서 본인은 1981年에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고, 1993年에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時代마다 달랐던 布帛尺 1尺 길이와 尺의 變遷過程을 밝혀 보았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完譯 朝鮮王朝實錄을 보면서 당시 手作業으로 찾아내었던 布帛尺에 대한 記錄보다 컴퓨터 검색을 통해 찾아낸 記錄이 훨씬 많고 새로운 사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서 未備했던 부분을 補完하고 誤謬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이전에 써여졌던 논문은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여러 文獻에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만을 拔萃하여 분석함으로써 國家에서 公式的으로 採擇했던 布帛尺 1尺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많기 때문에 内容을 기준으로 획기적인 事件과 事實이 있던 時代를 구분하여 3回로 나누어 研究하기로 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처음 布帛尺이란 單語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世宗 13年이다. 이후 布帛尺을 城壁 築造 時, 距離 測量 時, 家具 製作 時 등에 周尺, 黃鐘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燕山君 代까지를 前期로 정하였다. 中宗 代에 들어서 布帛尺을 基準尺으로 사용한 기록이 보인 후, 布帛尺

은 일반에서 사용되는 私尺과 혼용되면서 度制가 점차 무질서해지는데 이를 世宗 代 記錄에 맞추어 整備한 宣祖 代 그리고 宣祖 代의 布帛尺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英祖 代까지를 中期로 정하였다. 正祖實錄에는 布帛尺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純祖 代에 와서 布帛尺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옷감을 測量하는 자로서 布帛尺 이외에 針尺, 曲尺, 鯨尺 등 材質과 用途에 따라 다양한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純祖 代부터 純宗 代까지를 後期로 분류하였다.

朝鮮王朝實錄 前·中期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研究는 이미 발표하였고, 이번에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純祖 代부터 朝鮮王朝의 마지막왕인 純宗 代까지를 연구함으로써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研究 内容 및 方法

本 研究는 朝鮮時代 純祖代부터 純宗代까지 이 時期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을 史的으로 정리하여 당시의 布帛尺 1尺의 길이를 밝히는데 목표를 두었다.

研究 内容은 布帛尺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같은 時代에 사용되었던 周尺, 黃鐘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은 그 比例를 이용하여 布帛尺을 치수를 밝히는데 필요한 부분만 Ⅲ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의 布帛尺 기록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朝鮮王朝實錄 이외의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을 다루었다. Ⅴ장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純祖부터 純宗까지의 布帛尺을 拔萃하여 본문에 명시하고 Ⅳ장의 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朝鮮時代 後期 國家에서 採擇하였던 布帛尺 1尺의 정확한 길이를 밝히고자 한다.

文獻과 遺物을 통한 布帛尺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衣服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基本要素이나 尺度의 實體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現存하는 實物은 거의 모두 開化期 때의 것이고 文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아 확실한 考證은 불가능한 것이 연구의 制限點으로 남는다. 따라서 研究資料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기록과 그 외의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의 기록과 實測圖를 활용하였

다. 資料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學者들의 研究를 재인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II. 布帛尺의 定義 및 起源

1. 布帛尺의 定義

각 時代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尺度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각종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과 유사한 의미로 쓰여진 尺은 針尺, 綿紬尺, 芧布尺, 布尺, 鯨尺, 裁尺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布帛尺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는 廣義의 뜻도 있고, 각기 다른 의미로 細分化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廣義로서의 布帛尺이란 “衣服을 裁斷하거나 각종 布帛을 測量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자를 말하며”¹⁾라고 했고 尹張燮(1975)은 ‘韓國의 舊造尺度’에서 “布帛尺은 裁縫用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中國에서는 俗稱 裁尺이라고도 한다. 이 布帛尺은 民間에 通用되는 것이어서 法定尺이 아니므로 時代에 따라 또는 地方에 따라서 길이의 增減이 많았으므로 根據가 비교적 불확실하여 長短의 차이가 많다”고 하여 尺度하는 옷감의 종류, 사용되어지는 場所와 用途에 관계없이 모두 布帛尺이라 일컫고 있다.²⁾ 한편 俠義로 쓰여진 경우를 보면, 朝鮮王朝 實錄 世宗 12年 “古尺, 周尺, 布帛尺, 曲尺, 針尺, 平市正尺, 綿紬尺, 芧布尺, 舊造尺, 黃種尺, 造禮器尺 等 여러 종류로 가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우리 日常生活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다.”³⁾라고 쓰여 있어 당시에는 布帛尺, 綿紬尺, 針尺, 芧布尺 등 用途別로 엄밀하게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⁴⁾

2. 尺度의 起源

柳子厚는 ‘朝鮮貨幣考’에서 “歷史的 推理로써 尺의 存在가 檀君祖에 확실히 기원된 점만은 衣服制度에 연상하여 강하게 主張할 수 있다.”⁵⁾고 하여 尺의 기원을 檀君부터 잡았고 또한 우리 東方에서는 布帛麻, 布綿 등을 幣로 사용한 것이 인연이 되어 稅納에 있어서 布帛 등을 尺度하여 現代의 稅金과 같이 徵收한데서 布帛尺 또는 針尺이 발단되었다고 했다.⁶⁾

度量衡이란 ‘漢書律歷之’에 度는 長短을 재는 것, 量은 多少를 되는 것, 衡은 均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人類初期의 度量衡은 그 기준이 처음에는 人體의 각 부분이었고 이어서 穀物粒에서 求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예를 들면 尺은 손으로 寸數를 재는 象形文字이고 FEET(FOOT)는 발길이 등이다.⁷⁾ 그러나 社會生活의 발달로 集團規模와 交易範圍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다 正確하고 客觀性이 있는 尺度의 單位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항상 손쉽게 이용될 수 있어서 안정되고 변화가 적으며 표현이 직접적이어야 하였으므로 人體 및 自然物에서 그 기준을 求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III. 朝鮮時代 尺度의 種類

朝鮮時代에서는 布帛尺, 周尺, 黃鐘尺, 舊造尺, 造禮器尺 등이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布帛尺의 길이를 찾아내려면 諸 尺度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周尺

周尺이란 中國 周代의 尺으로 예부터 중요한 機具에는 특히 土地의 丈量과 里程 等 距離를 測定할 때 사용되었다. 量田尺 또는 里程尺으로 사용된 周尺은 布帛尺과 舊造尺보다는 短았으며 때와 장소와 사물이 다르므로 길이를 조사하여 確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朝鮮王朝 實錄 世宗 12年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길이는 20.81cm였다고 考證되고 있다. 經國大典에는 周尺이 21.04cm로 약간 길어졌으며, 肅宗때의 길이는 20.94cm였고, 正祖 20年에 완성된 華城城儀軌에는 19.63cm로 되어 있다.⁸⁾

2. 黃鐘尺

古代 音律의 基本樂器인 黃鐘管의 길이를 尺度의 기준으로 한 것을 黃鐘尺이라 한다. 朝鮮時代 世宗 12年 黃鐘尺 길이는 34.72cm였다고 考證되고 있다. 이 길이는 朝鮮時代 尺度의 기본이 되었는데, 世宗

때의 五禮 布帛尺에 準하면 7寸4分3釐이다. 英祖 26 年 尺度 改正 時의 길이는 31.25cm로 世宗 때에 비해 짧아졌다.⁹⁾ 純祖 20년 黃鐘尺 길이는 34.74cm였다. 창덕궁 所藏의 鑰尺 一面에 표시되어 있는 黃鐘尺 一尺 길이는 34.66cm 이다.

3. 舊造尺

舊造尺은 樂器의 製造와 建築, 造船, 造車 木工, 刻工, 石工 등, 주로 官家에서 쓰던 尺 으로 通稱 木尺, 工尺, 舊造尺, 魯班尺 등으로 불린다. 木手가 쓰는 것도 舊造尺이고, 방의 寬이를 나타내는 間數도 이 尺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世宗 12年(1430年) 舊造尺의 길이는 31.24cm이다. 正祖 20년(1796년) 완성된 華城의 實測檢尺에서 얻어진 舊造尺은 31.0 cm였고, 창덕궁 所藏의 黃鐘尺 34.66cm에 0.89倍를 하여 舊造尺 길이를 계산하면 31.17cm가 된다.¹⁰⁾ 光武 6년(1902년)부터는 30.3cm의 單位 길이를 가진 曲尺을 舊造尺으로 사용케 되었다.

4. 造禮器尺

造禮器尺은 文廟 및 宗廟 祭禮의 制度 基準尺이었다¹¹⁾. 世宗實錄 五禮 幣帛 欄에 보면 幣帛 制度에 사용하는 자(尺)는 布帛尺의 6寸4分에 해당한다는 記錄과 함께 첫머리에 新制 造禮器尺의 實寸圖를 그려 두었는데正確한 자(尺)로 實測해 본 길이는 28.64cm였다. 經國大典의 造禮器尺은 28.57cm였으며, 英祖 26年 改正 尺度 時 길이는 28.41cm였고, 純祖 때 實測된 水標橋水位 周尺에 의해 계산된 길이는 26.64cm였다. 창덕궁 所藏의 鑰尺에 나타난 一尺의 길이는 27.46cm였으나 朝鮮時代 末期 이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IV. 朝鮮王朝實錄 以外의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

正祖 元年(1776년)에 僕地에서는 재래의 不確實한 尺度를 계속 사용하므로 教를 내려 尺度의 統一을宣布했다.¹²⁾

純祖 9年(1809年)에 編纂된 「萬機要覽」 軍政篇에 보면¹³⁾ 무명과 삼베 一匹은 모두 40자(尺)라는 기록이 있다. 「大典會通」附錄 度量衡器¹⁴⁾에서는, 純祖 때 改建되고, 거기 刻印된 周尺길이는 世宗 때 周尺으로서 曲尺 6寸6分(20.30cm)이라 하였다. 이를 換算해보면 布帛尺은 46.80cm가 됨을 알 수 있다.

憲宗 10年(1844年)에 編纂된 「四禮便覽」에 布帛尺의 實測圖가 있는데, 각각 43.0cm와 45.2cm로 당시의 布帛尺 중 短尺이라 생각되며, 英祖 때 考正된 布帛尺의 길이가 이때와서 改正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光武 6年(1902년) 度制의 改正이 있기까지 별다른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經國大典의 46.80cm의 布帛尺 길이가 正祖 元年(1785年)에 編纂된 「大典通編」, 純祖 9年(1809年)의 「萬機要覽」, 高宗 때의 「大韓禮典」, 「六典條例」 等에 同一하게 記錄되어 있다는 것이다. 成宗과 高宗間의 約 430여년간 布帛尺의 길이에 별다른 變化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後期 周尺, 舊造尺, 針尺, 布帛尺이 通用되었고 같은 종류의 자라도 길이가 다른 것들이 混用되었다.¹⁵⁾

光武 6年 素亂한 度制를 바로잡기 위하여 行政官署인 平式院을 세우고 度量衡法을 改正했으며, 이후 鯨尺과 曲尺을 使用하기 시작하는데, 이 平式院에서의 새로 만든자는 倭尺이라 불리워 금기시 당했다.¹⁶⁾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은 재래의 尺度와 改正된 尺度가 同時에 사용되었으나 日本은 곧 統監府를 設置하여 內政干涉을 深化시키는 일환으로 度量衡 改正을 다시着手하였다.

光武 9年(1905년) 度量衡法을 宣布하여 近代의 度量衡 整備가 이루어 졌다.¹⁷⁾ 度量衡器를 白金으로 만들어 摄氏 溫度計의 눈금을 새겼고 15°C의 길이를 10/33尺으로 하여 1m의 10/33인 30.3cm를 單位길이로 하는 曲尺을 基準으로 定했다. 單位 名稱도 毫을 最低單位로 制定하였으니 10毫를 1釐, 10釐를 1分, 10分을 1寸, 10寸을 1尺, 10尺을 1丈, 1316尺을 1里로 하였다. 布帛을 度할 時에는 從來 慣用하던 布帛尺을 並用하되 分은 布帛尺의 1/100, 寸은 布帛尺의 1/10, 布帛尺은 1尺6寸, 丈은 10布帛尺이라는 名稱位를 制定하였다.¹⁸⁾ 따라서 改正 時 布帛尺의 길이를 曲尺으

〈表 1〉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 길이와 度器의 實長

文獻	大典 通編	萬機 要覽	四禮 便覽	大典 會通	增補四 禮便覽	大韓 禮典	六典 條例	度量衡 衍義	高宗 時代史	朝鮮 社會考	戶曹 尺度
年度(年)	1776	1809	1844	1865	1902	1902	1902	1902	1905	1912	1922
布帛尺 길이(cm)	46.80	46.80	44.80	46.80	44.80	46.80	46.80	48.80	48.48	48.80	48.70

로 計算하면 48.48cm가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曲尺이 모든 尺度의 基準이 된 점이다. 이것은 결국 日本의 度制와 같은 되었던 것으로 日本이 朝鮮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모든 制度의 基準이 되는 度量衡에 우선적으로 손을 대었음을 알 수 있다.

隆熙 3年(1909年) 9월 度量衡法을 制定하여 光武 6년의 度量衡法을 废止시키고, 各稱, 命位 및 種類를 日本과 동일하게 했는데, 光武 6年 政府에서 판매한 度量衡器는 布帛尺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하여 布帛尺만을 禁止시켰다. 布帛尺만을 禁止시킨 이유로 당시 布帛尺과 길이가 거의 같은 針尺이 通用되면서 度制가 매우 문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朝鮮社會考」에 “朝鮮時代末에는 周尺, 营造尺, 針尺, 布帛尺 等이 通用되었는데 이중 布帛尺은 布帛商店으로 여러 種類가 있었다. 1尺은 曲尺의 1尺4寸6分(44.2cm), 1尺6寸1分(48.8cm) 等 尺마다 差異가 있었고, 針尺은 家庭에서 使用되는 私尺으로 전혀 公用의 것이 아니며 曲尺의 1尺6寸6分(50.3cm)으로 布帛尺보다는 5分이 길었는데, 당시 布帛 1匹이란 이 針尺 40尺을 두고 이르는 것이었다”고 하였다.¹⁹⁾ 「朝鮮舊社會事情」에 “布帛尺은 布帛에 使用되는 尺인데, 曲尺으로 1尺6寸1分에 該當되며 朝鮮의 1匹은 布帛尺 50尺을 말한다. 針尺은 裁縫에 사용되는 尺으로, 鯨尺과 같으면서 曲尺 1尺6寸6分과 同一하다. 이 尺은 家庭用으로 私尺에 지나지 않는다.”라고²⁰⁾ 하였고, 「朝鮮社會考」에서는 布帛尺 1匹은 針尺으로 40尺을 두고 이르는 것이라 했고, 「朝鮮舊社會事情」에서는 布帛 1匹은 布帛尺으로 50尺을 말한다고 했다. 이처럼 家庭에서 쓰는 것과 商人들이 쓰는 것과는 길이가 달랐다.

「尺度綜考」에 “日帝때 布帛尺은 비단을 재는데 쓰는 短尺이 51.27cm이고 무명用의 長尺이 58cm로 그

差異가 深했으며”²¹⁾라 하여 자의 用途에 따라서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四禮便覽」卷之五와 增補板에는²²⁾ 44.8 cm의 布帛尺의 圖尺이 있다. 「度量衡衍義」²³⁾에는 光武 6年的 改定度器가 5分之1의 縮尺으로 表示되어 있는데 48.8 cm의 布帛尺이 있다.

또 高橋正에 의하면²⁴⁾ 尺度의 長短을 精查하려고 尺의 原器를 찾아보니 다행히도 戶曹의 庫底壁 中에서 6種의 尺이 發見되었는데, 曲尺 기준으로 周尺은 6寸8分(20.6 cm), 造禮器尺은 9寸5厘(27.4cm), 营造尺은 1尺(30.3cm), 黃鍾尺은 1尺1寸2分(33.9 cm), 布帛尺은 1尺6寸1分(48.7cm)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의 길이와 度器의 實長을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그후 1926年 朝鮮度量衡令을 公布, 미터법(1cm=3分3釐, 1m=3尺3寸)으로 50cm, 1m의 자를 現在까지 使用하게 되었다.²⁵⁾

V. 純祖實錄－純宗實錄에 나타난 布帛尺

純祖 代부터 純宗代까지 朝鮮王朝實錄²⁶⁾에 나타난 布帛尺에 대한 記錄은 純祖 代 2件, 純宗 代 1件이다.

1. 純祖實錄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純祖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純祖 12年에 1件, 20年에 1件으로 모두 2件이다.

純祖 12年 4月 21日 기록에 보면, 城을 깨뜨리기 위해 처음 땅을 팔 때는 10보 간격으로 끊어 7군데를 팠는데, 구덩이의 높이는 布帛尺으로 2尺 5寸이었으며, 너비도 또한 그와 같았다. 그 앞 30보에서 언

덕이 끝나고 구덩이가 되었으므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또 그 앞 60보에서는 사방 1尺 8寸의 크기로 과서 北將臺 아래까지 이르게 하였다.

純祖 20年 3月 27日 경상감사 金履載가 测量할 때에 모든 式例에 관한 것은 遵守할 법에 의하여施行한다고 하였다. 测量의 자는 戶曹에서 반포하되,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면 각 고을에서는 그 制度에 따라 만들어 各面, 各所에 나누어 준다. 测量의 줄은 各里에 미리 도착하여 일제히 준비하게 한 뒤에 수시로 검열하여, 量田의 일이 정밀하지 못한 憂患이 없도록 한다. 测量의 줄이 늘거나 줄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는데, 가느다란 대나무를 엮어서 몇 자를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测量의 자는 制定한 자를 준수하되, 周尺 4尺 7寸 7分 5釐에 준한다. 甲戌年 量田 때에 새로 만든 자는 遵守尺에 비하여 布帛尺의 1寸이 더 된다.

純祖 12年 城을 깨뜨리기 위해 주변 땅을 팔 때 측량을 위해 布帛尺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純祖 20年 测量하는 자는 戶曹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量田을 함께 있어 尺度의 늘거나 줄어들을 근심하고 있다. 또한 量田을 위해 새로 만든 자는 布帛尺보다 1寸이 더 된다하여 새로製作한 量田尺은 布帛尺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純祖實錄에 布帛尺 1尺 길이는 나와있지 않으나 당시에 編纂된 萬機要覽이나 大典會通에 布帛尺의 1尺 46.80cm로 되어있으므로 英祖代의 尺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純宗實錄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純宗代의 布帛尺에 관한 기록은 隆熙 3년의 1件이다.

隆熙 3年 9月 20日 기록에 보면 光武 6년 度量衡法에 의하여 政府에서 販賣한 度量衡器는 布帛尺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隆熙 3年 度量衡法을 새롭게 制定할 때 光武 6년의 度量衡法을 废止시키고, 各稱, 命位 및 種類를 日本과 동일하게 했는데, 布帛尺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²⁷⁾하여 布帛尺만을 禁止시켰는데 이는 당시의 혼란함을 짐작케 한다.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純祖이후 憲宗부터 高宗까지 布帛尺 뿐만아니라 다른 尺度에 관한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다가 純宗代에 布帛尺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高宗代 두 번에 걸쳐 度制의 改正이 있었는데 實錄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고 高宗時代史 등 다른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朝鮮時代 後期에 編纂된 여러 文獻들을 비교·검토해 보면 布帛尺의 길이가 44.80cm에서 48.80cm 까지 약4cm 범위 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는 46.80cm 외의 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英祖代에 整備된 46.80cm가 純宗代까지 國家에서 채택했던 布帛尺 1尺의 길이였음을 알 수 있다.

VI. 要約 및 結論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은 王朝 別로 기록되어있어 年代 別로 國家에서 채택했던 尺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前期인 世宗 4년에는 布帛尺이 웃감을 재는데 사용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이 있고, 世宗代부터 燕山君代 사이에는 城壁을 쌓을 때 测量 時, 거리나 里程의 测量 時, 사람의 身長 测定 時 布帛尺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朝鮮王朝實錄 中期에는 布帛尺의 용도가 前期보다 훨씬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布帛尺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基準尺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1尺의 길이는 世宗代 田制詳定所의 布帛尺 46.73cm임이 틀림없다고 본다.

朝鮮王朝實錄 英祖 26년에는 世宗代의 布帛尺을 三陟俯에서 가져와 經國大典의 치수에 의거하여 較正하였는데 이때 布帛尺 1尺 길이는 46.80cm였다. 또한 黃鐘尺, 周尺, 朝禮器尺, 謹造尺 등 世宗代에 사용되던 尺들이 英祖代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純祖 12年 城을 깨뜨리기 위한 거리 测量시 布帛尺을 사용하였고, 純祖 20年 测量의 자는 戶曹에서 관장한다는 것과 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재질을 써야한다는 기록이 있다. 甲戌年 量田 때에 새로 만든 자는 遵守尺에 비하여 布帛尺의 1寸이 더

된다하여 純祖實錄에 布帛尺 1尺 길이는 나와있지 않으나 당시에 編纂된 萬機要覽이나 大典會通에 布帛尺의 1尺 46.80cm로 되어있으므로 英祖代의 尺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隆熙 3年 度量衡法을 制定하여 光武 6년의 度量衡法을 廢止시키고, 各稱, 命位 및 種類를 日本과 동일하게 했는데, 布帛尺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다하여 布帛尺만을 禁止시켰는데 이는 당시의 혼란함을 짐작케 한다.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純祖이후 憲宗부터 高宗까지 布帛尺 뿐만아니라 다른 尺度에 관한 어떤 記錄도 보이지 않다가 純宗代에 布帛尺에 대한 記錄이 보인다. 高宗代 두 번에 걸쳐 度制의 改正이 있었는데 實錄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고 高宗時代史 등 다른 文獻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朝鮮時代 後期에 編纂된 여러 文獻들을 비교·검토해 보면 布帛尺의 길이가 44.80cm에서 48.80cm 까지 약4cm 범위 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는 46.80cm 외의 다른 記錄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英祖代에 整備된 46.80cm가 純宗代까지 國家에서 채택했던 布帛尺 1尺의 길이였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1) 六典條例 (1973). 서울: 法制處(編). 卷3 戶曹 度量衡條, p. 74.
- 2) 尹張燮 (1975).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設學會誌, 19 (63), p. 3.
- 3) 石宙善 (1979).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p. 110.
- 4) 李恩卿 (1993).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 5) 柳子厚 (1940). 朝鮮貨幣考. 京城: 學藝社, pp. 480-481.
- 6) 앞의 글, p. 485.
- 7) 衣生活研究 (1978). 大版·關西衣生活研究會, p. 70.
- 8) 尹張燮 (1975). 앞의 책, p. 5.
- 9) 朴興秀 (1967). 周秦漢時代의 中國 量制와 量尺에 관하여, 閔泰植博士古稀記念論文輯, p. 199.
- 10) 經國大典 (1970). 京城: 朝鮮總督府 中樞院. 券之六工典 度量衡, p. 526.
- 11) 六典條例 (1973). 앞의 책, p. 74.
- 12) 朝鮮舊社會事情 (1929).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編), p. 200.
- 13) 石宙善 (1979).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p. 110.
- 14) 萬機要覽. 民族文化推進會(編), 軍政編, p. 291.
- 15) 六典條例 (1973). 앞의 책, p. 74.
- 16) 新興의 朝鮮 (1929). 朝鮮總督府中樞院(編), p. 175.
- 17) 朝鮮舊社會事情 (1929). 앞의 책, p. 200.
- 18) 高宗時代史 (1972).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卷 5, pp. 623-624.
- 19) 朝鮮社會考 (1912). 京城: 朝鮮駐屯憲兵隊司令部(篇), p. 30.
- 20) 朝鮮舊社會事情 (1929). 앞의 책, p. 201.
- 21) 藤田元春 (1929). 尺度綜考, 東京: 力江書院, p. 54.
- 22) 四禮便覽 (1844). 卷之五, 喪禮 喪圖二, p. 92.
- 23) 增補四禮便覽 (1900). 書業堂藏析, 卷之五, 喪禮, 喪圖三.
- 24) 高橋正 (1922). 度量衡衍義, 日語版, p. 48.
- 25) 李恩卿 (1993). 앞의 책, p. 88.
- 26) 朝鮮王朝實錄.
- 27) 承政院日記, 隆熙 3年 9月 20日記 (1976).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p. 27.
- 一星錄, 隆熙 3年 9月 20日 (1974). 서울: 서울大古典刊行會, p. 74.
- 純宗實錄, 隆熙 3年 9月 20日, 卷3 32張.